##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[ ] 주택임차

( 앞쪽)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성명(상호) 임차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 주소(사업장) 전화번호 (신청인) 성명(상호)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건 물 소 유 자 전화번호 주소(사업장) (임대인)

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(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)

「국세징수법」 제109 조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(신청인)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.

년 월

건물 소유자(임대인)

(서명 또는 인)

일

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에 따라 위 건물 소유자(임대인)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세 무 서 장 귀하

첨부서류	1. 건물소유자(임대인)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
	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)	없음

## 유의사항

- 1.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.
- 2.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건물소유자(임대인)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(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)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.

